

재단법인 사랑글로벌아카데미

저o

관

2024. 11. 16.

이사장 때 
이 사가리 
이 사 가 
이 사 

이 사:誌 
이 사일성 
이 사 2卞負/ 

감 사 矢김 

감 사김절꺽엽을

재단법인 사랑글로벌아카데미 정관

제정 2020. 01. 18.

개정 2020. 08. 28.

개정 2021. 01. 09.

개정 2022. 03. 27.

개정 2024. 11. 16.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사랑글로벌아카데미(Sarang Global Academy)' 라 한다. 영문으로는 'Sarang Global Academy Foundation' 로 표기한다.

제2조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3길 37, 강남예배당 신관 2층(서초동, 사랑의교회)에 두고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3. 27.)

제3조 (목적)

본 법인은 국가발전과 글로벌 사회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기독교 신앙과 이타적 사랑에 바탕을 둔 인재양성과 학술 연구, 문화예술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기독교 인재양성을 위한 특화과정 및 세미나, 컨퍼런스 운영
2. 해외 유명인사 초빙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3. 글로벌 다음세대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류, 체험활동
 4. 글로벌 기독교 교육 기관과의 교류, 제휴
 5. 디지털 변화에 부응하는 미디어 콘텐츠의 개발 및 자료실의 운영
 6. 기독교 문화예술 연구, 전시, 플랫폼 기반 공유
-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출판업
 2. 사이버 강의 콘텐츠 판매
 3. 기타 법인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 ③ 제 2항의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 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5조 (수혜평등의 원칙)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선거운동의 금지)

법인명의 및 법인의 대표자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않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7조 (재산의 구분)

-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승인한 재산
 3.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③ 본 법인의 설립 당시 기본재산은 별첨과 같다.

제8조 (재산의 관리)

- ①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 의무부채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하며,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취득 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9조 (경비)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기부금)

- ①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 ③ 기부금의 모집 활용 및 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1조 (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처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2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4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 세출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 27.)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 3 장 임 원

제1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이 사 7인 이상 11인 이하(이사장 1인 포함)
- ② 감 사 2인

제18조 (상임이사)

-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의 역할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임기 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 또한 이사회 의 결의를 거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장과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결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2.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 3. 본 법인의 의무와 재산 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4. 본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② 감사는 본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26조 (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적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4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①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②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④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⑤ 사업에 관한 사항
- ⑥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⑦ 기부금의 모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⑧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 (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며, 정관변경은 제38조에 의거 의결한다.

제31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2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의사록은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4조 (사무국)

-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해 산

제35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7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 7 장 보 칙

제38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4.11.16.>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